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32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7. 7.경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 18. C을 상대로 양수금 2,996,488원 및 그 중 1,962,5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5.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26693),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8. 10. 26.경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20. 9. 29. C을 상대로 양수금 2,046,023원 및 그 중 925,1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6.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이 법원 2020차전4159), 2020. 10.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

C의 아버지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C의 어머니인 피고, 망인과 피고 사이의 아들들인 G, C, H, I이 있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2010년식 모닝 승용차(당시 주행거리 61,000km, 이하 ‘구형 모닝 승용차’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와 C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 26. 이 사건 주택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일인 2018. 10. 26. C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8. 10. 29. 구형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황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부동산 등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 채무 이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1,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K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각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고,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직후 망인의 상속재산 중 구형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고 하여도 당시 C의 재산 상태와 구형 모닝 승용차의 시가 등에 비추어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C에게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 제1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경민

별지